

Korean Tax Update

May 2016, Issue 23

[조세뉴스]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기획재정부는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이 타결됐다고 20 일 밝힘. 이번 개정협상에 따라 앞으로 원천지국(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 부과하는 배당 세율이 현행 5% 또는 10%에서 5%로 인하하고,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은 현행 10%에서 5%로 내려감.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들어감. 특히 이번 한-체코 조세조약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함.

한-이란 조세협력회의 개최 -양국간 세제·세정 이해 증진 및 조세협력 강화 기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5.30.(월)~6.1.(수) 3 일간 서울에서 「한-이란 조세협력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는 2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됨. 이란측은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경제재정부 차관보(Deputy Minister)겸 국세청장을 수석대표로 국세청 관계자 등이 방한하며 우리측 임환수 국세청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과도 만날 예정임. 또한,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교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은 '09.12 월 발효된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계획.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127 호, 2016.5.10)

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 (제 23 조 제 1 항 제 44 호 및 제 45 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제 104 조의 21 제 3 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③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 (제 116 조의 10 제 2 항 제 7 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 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④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제 116 조의 29, 30, 31, 32, 33 신설)

- ✓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
- ✓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
- ✓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 ✓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 ✓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 ✓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118 호, 2016.5.3)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제 28 조의 2 제 5 항 신설)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 2016-12 호, 2016.5.20)

①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조 제 4 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 분의 100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 34 조 제 4 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 분의 100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예규·판례]

[예규 1]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면법인-2220, 2016.04.21

- 지배주주 등이 분할교부주식 등의 2 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2]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재조특-465, 2016.04.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 22652 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 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 22583 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의 개정예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 23590 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2 조 제 5 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예규 3] 인도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재국조-25, 2016. 1. 19.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 93 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4] 한·일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재국조협력-147, 2016.03.24

- 한·일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예규 5]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법령부가-62, 2016.03.22

-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판례 1]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대법 2015 두 52326, 2016.04.15

-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심판례 1] 부동산을 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여부

조심 2016 지 0355, 2016.5.11

-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2] 병원의 주차장 수입과 직원식당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 전 0892, 2016.5.12.

-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퇴원환자 외 외부이용자에 따라 주차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직원식당은 환자가 아닌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 및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쟁점수입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심판례 3]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부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취득세의 환급가능 여부

조심 2016 지 0295, 2016.5.11.

-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민법」 제 166 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 반환결정 등을 받기 전까지 매도자인 ООО 와 현실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확정(화해권고결정)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는 연부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전체 물건에 대해 연부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6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